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를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1) 채취금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허가취소			
2) 그 밖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골재채취 중지 1개월	골재채취 중지 2개월	골재채취 중지 3개월	허가취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정해진 채취금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김 현 미

●대통령령 제3037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호허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 종전에는 폐차장 입고일 이후의 기간을 검사 지연기간에 포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유예절차를 거쳐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기업부장관

박 영 선

●**대통령령 제30380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5.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의 승인업무 중 승인신청서의 접수,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등의 업무만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하고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는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도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